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24 제출연월일 :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
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력의 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4
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	
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u>부터</u>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는 경우	